

인천광역시 공항공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4. 2. 11(화)
건설교통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: 2014. 1. .
- 나. 제안자 : 인천광역시장
- 다. 회부일자 : 2014. 1. .
- 라. 상정일자 : 2014. 2. 11.(제213회 임시회 제2일차 건설교통위원회)
 - 제안설명 : 건설교통국장 강 상 석
 - 검토보고 :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임 현 기
 - 질의 및 토론
 -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공항공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원금액 분담기관과 기관별 분담비율 및 조례의 유효기간을 조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통행료 지원기관 중 “국가 또는 해당지역 관련 사업자”를 삭제(안 제4조제2항제4호)
- 지원대상 지역 명칭을 섬의 명칭에서 법정동으로 변경(안 제5조제1항)
- 「인천광역시 공항공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」 유효기간을 “제3연륙교 개통 시”에서 “2016년 12월 31일”로 변경(안 부칙 제3998-1호 제2항)
- [별표 1] 통행료 지원금액 분담목표 예상비율 조정(안 별표 1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통행료 지원 분담기관 중 지원이 불명확한 국가 또는 해당지역관련사업자 항목을 삭제하고 분담비율을 조정한 것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견이 없음.
- 다만, 2013년 3월 29일 개정 공포 하였던 부칙의 통행료 지원 유효기간을 제3연륙교 개통 시까지에서 2016년 12월 31일로 변경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어려운 여건 속에서 통행료 분담을 위하여 LH와 협의를 노력한 것은 칭찬할만하나 언론대응이 미숙하여 부정적인 기사가 보도되는 등 미진한 부분이 있었음. (김병철 의원)
⇒ 네 그렇습니다.(영종청라사업본부장)
- 조례개정이 1년도 채 안된 시기에 다시 개정을 한다는 것은 지난 조례개정 당시 집행부의 역할이 부족했던 것 아닌가? (전원기 의원)
⇒ 지난 조례 개정은 영종 주민들이 이룬 큰 성과로서 생각하며, 이번 개정안은 예산집행을 위한 개정임(건설교통국장)
- 지원시기 조정 이유는?(전원기 의원)
⇒ 제3연륙교 개통시기가 불투명하므로 3년 단위로 정확한 비용 추계를 해서 집행하고자 하는 것임.(건설교통국장)
- 지원 혜택을 중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며, 굳이 현재 시점에서 지원시기를 단축해야 하나? (전원기 의원)
⇒ 승용차 통행료 지원의 형평성 등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.
- 제3연륙교 개통이 근본적인 해결책인데, 연륙교 개통을 위한 노력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며 지원시기는 현행대로 운영을 해본 후 심사숙고하여 개정을 검토해야...(전원기 의원)

- 2013년도 분담금액은 어떻게 되는지? (이재병 의원)
⇒ 시 48억, 중구·옹진군 18억, 경제청 22억임.
- 영종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과 제3연륙교 개통시까지라는 불분명한 시기를 유효기간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.(이재병 의원)
⇒ 당초안과 같이 3년 단위의 기간으로 지원하려는 것임.
- 3년에 대한 근거도 불충분하지만 지원기간을 명확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는 찬성임.(이재병 의원)
- LH가 이미 거둬들인 제3연륙교 건설비에 대한 이자는 지역주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시는 이를 위해 소송 등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(김병철 의원)
⇒ 검토해보도록 하겠음.(건설교통국장)

5. 토론요지

- 가. 찬 성 : 이도형, 이재병, 김병철, 이재호, 전원기, 전용철 의원
- 나. 반 대 : 없 음.

6. 심사결과

- 원안가결(재석위원 6, 찬성 : 6명)

7. 기타

- 특이사항 없음

- 붙임 1.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2. 신·구조문대비표 1부 끝.

인천광역시조례 제 호

인천광역시 공항공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공항공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제1항의 통행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는 다음 각 호의 대상 및 방법에 따라 별표 1의 분담비율로 정한다.

1. 인천광역시
2. 인천광역시 중구·옹진군

제4조제3항제1호를 삭제한다.

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·운남동·운북동·운서동·을왕동·남북동·덕교동·무의동 및 옹진군 북도면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.

조례 제3998-1호 「인천광역시 공항공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」 부칙 제2항 중 “제3연륙교 개통 시”를 “2016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통행료 지원금액 분담비율(제4조제2항 관련)

기 관		비 율	
		2013년도분	2014년도분 이후
인천광역시	일반회계	100분의 55	100분의 40
	특별회계	100분의 25	100분의 40
인천광역시 중구·옹진군		100분의 20	100분의 20

- ※ 특별회계는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로서 경제자유구역청장은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9조의8과 이 조례 제4조제3항제3호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와 통행료 지원금액에 대하여 협의·분담하여야 한다.
- ※ 중구·옹진군은 100분의 20에 대하여 해당지역 주민의 실제 이용 비율로 분담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통행료 지원) ① (생략)</p> <p>② <u>시장은 제1항의 통행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상 및 방법에 따라 별표 1의 지원금액 분담목표 예상 비율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. 다만, 달성되지 아니한 해당 비율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인천광역시 2. 인천광역시 <u>중구</u> 3. 인천광역시 <u>옹진군</u> 4. <u>국가 또는 해당지역 관련 사업자</u> <p>③ (생략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국가에 대하여는 국비 보조 또는 지원 요청</u> 2. ~ 3. (생략) <p>제5조(지원 대상) ① <u>인천광역시 중구(영종도, 용유도, 무의동, 잠진도, 실미도를 말한다) 및 옹진군(북도면을 말한다)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.</u></p>	<p>제4조(통행료 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제1항----- ----- 확보는 ----- ----- 분담비율로 정한다. <단서 삭제>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인천광역시 2. 인천광역시 <u>중구·옹진군</u> <p><삭제> <삭제>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제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. ~ 3. (현행과 같음) <p>제5조(지원 대상) ① ----- <u>중산동·운남동·운북동·운서동·을왕동·남북동·덕교동·무의동 및 옹진군 북도면-----</u> ----- --.</p>

부칙(제3998-1호)	부칙(제3998-1호)
① (생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----- <u>제3연륙교</u>	② ----- <u>2016년 12</u>
<u>개통 시</u> -----	<u>월 31일</u> -----